

총학, 자치회비 감사시스템 확대 ...

자치회비를 둘러싼 논란

최병현 기자 chbh1027@khu.ac.kr
최재원 기자 jankin1997@khu.ac.kr

지난 달 불거졌던 체육대학(체대) 신입생 오리엔테이션 논란은 체대 학생회의 ‘자치회비 운용’에 대한 의혹으로 번져나갔다. 이후 재학생 대표를 자청한 김태우(체육학 2015) 군은 ‘자치회비 예·결산 투명 공개’를 주장했고, 체대 학생회 측에서 이를 수용하며 사건이 일단락된 바 있다. 이후 지난 15일 체대 학생회는 신입생 오리엔테이션 결산과 증빙자료를 온·오프라인에 공개하면서 향후 깨끗하게 예산을 운용하겠다고 거듭 약속했다.

이 논란의 중심에 서 있었던 것은 체대 학생회였지만, 자치회비를 둘러싸고 벌어지는 문제란 비단 특정 단과대학(단과대)에 국한된 사안만은 아니다.

자치회비 문제를 바라보는 일반 학생들의 시선은 ‘의구심’이다. 학생 일반에게 다가오는 자치회비 문제란 대체로 ‘불투명한 회계처리’와 ‘강압적인 납부 요구’의 측면이 강한 탓이다. 몇몇 소수의 학생들이 이에 대한 문제제기를 할 때면 거의 언제나 학생회 측의 ‘항상 그래왔으니 괜찮다’는 식의 답변과 대면하게 된다. 관점에 따라서는 학생회 측의 안일함이 문제를 키우는 단초를 제공하는 셈이다.

이와 관련해, 우리신문은 자치회비에 대해 자세히 알아보는 기사를 준비했다. 자치회비에 대한 기본적인 개념을 짚어보고, ‘자치회비 문제’와 관련된 관리 시스템 몇 가지를 조명해본다.

모든 학생은 총학생회 회원

회비납부의 책임이 따르는 셈

총학생회(총학)의 회원은 누구인가? 총학 회칙 제1장 5조에 따르면 ‘본 회의 정회원은 경희대의 모든 재학생’으로, 그리고 ‘휴학생은 준회원’으로 규정하며 이들이 ‘그에 따른 권한과 책임을 지게 된다’고 말하고 있다. 그리고 동 회칙 제2장 11조에서는 이들 정, 준회원이 ‘본 회의 운영전반에 관해 알 권리와 모든 자치활동에 참가할 권리’와 ‘선거권이나 피선거권’을 갖고 있음을 언급하고 있다. 제2장 12조에서는 ‘회칙준수 및 사업진행의 책임’과 ‘회비납부의 책임’ 등을 제시하고 있기도 하다.

요컨대, 경희대학교에 적을 두고 있는 학생



지난해 9월 열린 확대운영위원회에서 자치회비 분배율을 심의했다. 이날 참석한 77명 중 62명의 찬성으로 자치회비 회계감사의 단계적 확대시행이 결의됐다.

감사의 대상이 관례적으로 총학생회에 한정돼 왔고, 그마저도 임기가 끝나 는 시점에야 진행되다보니 감사 결과에 따른 피드백이 제대로 이뤄지지 않았다. 게다가 적은 인력이 한 해 동안의 회비 사용내역을 한꺼번에 검토하다보니 효율성 또한 높지 않았다.

이라면 모든 사람이 총학의 회원인 셈이다. 그런데, 총학은 ‘학교 본부에 소속되지 않은 학생자치기구’라는 정체성을 갖고 있기 때문에 학교 본부의 재정적 간섭으로부터 자유로워야 할 필요가 있다. 회칙 제2장 12조에서 ‘회비납부의 책임’을 거론하는 것은 그런 이유에서다. ‘경희대의 모든 재학생이 총학의 정회원’이라는 점을 고려해보면, 결국 ‘재학생 모두에게 회비납부의 책임’이 따르는 것이다.

일반적으로 자치회비는 등록금에 포함된 형식으로 매학기 시작 전에 납부하도록 등록금고지서를 통해 함께 고지된다. 그런데 등록금에 포함되는 입학금과 수업료는 반드시 내야하지만, 의료회비나 자치회비는 내지 않아도 문제가 되지 않는다. 위에서 언급했듯 자치회비는 회원의 책임일 뿐 의무사항은 아니기 때문이다.

학기 초에 납부된 자치회비는 몇 차례의 논의를 거친 후 총학생회, 특별기구, 각 단과대학 학생회에 분배된다. 가장 먼저 중앙운영위원회에서 1차적으로 자치회비 분배율을 심의, 의결한다. 이후 회칙 제52조 1항(‘본 회의 회비는 확대운영위원회에서 책정하여 전학대회에서 심의, 의결한다’)에 의거하여 확대운영위원회(확운위)가 총학생회와 7개 특별기구의 전년도 결산내역 및 당해년도 사업계

획서, 예산안 등을 검토해 이를 바탕으로 자치회비 분배율을 확정하게 된다.

자치회비를 받는 기구의 예·결산 심의에 관한 부분도 회칙으로 명시하고 있다. 총학 회칙 제6장 33조 5항의12가 바로 그 부분으로, ‘본 회에서 자치회비를 받는 기구의 예·결산을 심의, 의결’한다고 되어있다. 지난 21일에, 제1차 확운위에서 제기된 건의가 바로 이와 관련된 부분이다. ‘단과대학 또한 자치회비를 받는 기구이므로 예·결산 심의를 받아야 한다’는 건의였고, 이는 과반수가 찬성해 의결됐다.

‘자치회비를 분배받는 기구 전체’를 결산과 감사의 대상으로

이러한 자치회비는 그간 다양한 문제점을 지적받으며 문제 해결을 위한 노력을 강요받아왔다.

이와 관련해 서울캠퍼스(서울캠) 제47대 총학생회는 “이제는 자치회비를 단순히 공개하는 것만으로는 학생들의 신뢰를 이끌어낼 수 없다”고 말하면서, “자치회비 회계감사를 단계적으로 확대 시행해야 한다”고 주장하기도 했다.

이런 입장으로부터 출발한 서울캠 제47대

총학의 ‘회계감사 확대시행’ 계획은 기존에 시행되던 회계감사에 대한 문제의식에서 비롯됐다. 총학 회칙 제9장 55조 3항, ‘전반적인 감사는 매년 진행되는 학우참여형 회계감사시스템을 통해 실시한다’라는 대목은 자치회비에 대한 회계감사에 대해 매우 대략적이고 두루뭉술하게 언급하고 있기 때문이다. 또 현실적으로는 감사의 대상이 관례적으로 총학생회에 한정돼왔고, 그마저도 임기가 끝나는 시점에야 진행되다 보니 감사 결과에 따른 피드백이 제대로 이뤄지지 않았다. 게다가 적은 인력이 한 해 동안의 회비 사용내역을 한꺼번에 검토하다 보니 효율성 또한 높지 않았다.

이러한 문제점 때문에 서울캠 총학은 특별기구와 단과대 학생회, 학부 혹은 학과 학생회에도 해당 회칙을 적용시켜 공식적인 회계감사의 대상으로 지정하고, 1년에 총 4번 감사를 진행하는 ‘회계감사 확대시행’ 계획을 세우기에 이른다. 이후 서울캠 총학은 회칙 9장 52조에 5항을 신설해 ‘자치회비를 분배받는 기구 전체’를 결산과 감사의 대상으로 삼자는 내용을 발의하려 했지만, 작년 10월 29일에 열린 예정이었던 전체학생대표자회의(전학대회)가 성원 미달로 무산됨에 따라 이 회칙 개정 논의 또한 흐지부지되고 말았다.



KYUNG HEE UNIVERSITY

Global Collaborative 2016 Summer Program

“국내외 석학 및 국제기구 전문가의 강의를 듣고 세계 여러나라 학생들과의 교류의 장을 경험하세요!!”

- 프로그램 기간
- 개설강의
- 참여대상
- 신청기간
- 장학금
- 문의

2016.07.04~2016.07.29, [4주간]

“Humanity, Civilization and Global Governance”에 특화된 20개 강의(GC홈페이지 참조)

국내외 대학(원)생

2016.03.14~2015.04.30(홈페이지 온라인 신청)

경희대학생의 경우 미래문명원 네오르네상스장학 신청 가능(추후 공지예정)

미래문명원 Tel: 02-961-0995 Email: summer@khu.ac.kr 홈페이지: http://ga.fc.khu.ac.kr/gep 페이스북: www.facebook.com/khugc

